

中區廳에 매각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구민종합체육센터로 조성하고, 서울시 수도자재사업소는 현 부지 및 건물이 너무 협소하여 城東區 馬場洞 797번지 토지 4,929평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地方財政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서 “地方自治團體長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 제37조제1항에서 “市長은 地方財政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地方議會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근거규정에 의거 본 안건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地方財政法上 공유재산의 매각은 잡종재산에 한하며, 본 건물을 잡종재산으로 전환은 지난 94년에 완료되었고, 地方財政法施行令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제2항에서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 수도자재사업소 역시 현 부지의 협소로 廳舍 이전이 장기숙원사업이었으므로 마침 이번 기회에 中區廳에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 계획과 수도자재사업소 馬場洞 이전계획이 서로 맞물려 있어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우리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는 현 수도자재사업소 부지인 中區 興仁洞 131 부지를 中區廳에 매각하고자 하는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市長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水資源管理委員會가 의결한 바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97 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을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중구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구 흥인동 131 소재 수도자재사업소 부지(토지 2필지 8,704.8㎡, 건물 14동 2,137.4㎡)를 중구청에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사업특별회계 '97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 관리계획 변경계획 계상재산

- 처분 1건 ─ 토지 2필지 8,704.8㎡(2,633평)
- └─ 건물 14동 2,137.4㎡(647평)

(다음 페이지에 계속)

'97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약 요약												
										회계명 : 수도사업특별회계		
구 분		건수	면적(m ²)	금액(천원)	세 부 사 항							
취 득	계											
	1. 매입											
	2. 교환 취득											
처 분	계	토지 건물	1 1	8,704.8 2,137.4	22,291,836 92,558							
	3. 매각	토지 건물	1 1	8,704.8 2,137.4	22,291,836 92,558	○ 중구청-구민체육센터 건립예정 부지 - 토지 2필지 8,704.8m ² 22,291,836천원 - 건물 14동 2,137.4m ² 92,558천원						
	4. 양여											
	5. 교환 처분											
시 유 재 산 관 리 계 획 ('97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표)												
회계명 : 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m ²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7,339	6,235,214				1	7,339	6,235,214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7,339	6,235,214				1	7,339	6,235,214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1	5,454	4,633,718	1 1	8,704.8 2,137.4	22,291,836 92,558	2 1	14,158.8 2,137.4	26,925,554 92,558	
	1. 매각	토지 건물 기타				1 1	8,704.8 2,137.4	22,291,836 92,558	1 1	8,704.8 2,137.4	22,291,836 92,558	
	2. 양여	토지 건물 기타										
	3. 교환 처분	토지 건물 기타	1	5,454	4,633,718				1	5,454	4,633,718	

(매각대상 재산목록 수록생략)

그리고 안건의 성질상 현지확인이 필요하거나 법령의 검토가 더 요구된 九老區 九老洞 598·456 일대 구로역·신도림역 상세계획구역 결정 의 8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해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14건을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市議會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 없으시면 이상 1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676	제출년월일 : 1996.12.2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	--------------------------------------

1. 건 명 : 도시계획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는 -1965년경 휘경학원에서 교사 신축시 인접 주택지 방향으로 약 20m 정도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변경 결정	공원	배 봉 산 근린공원	동대문구 전농동 산 32-20 일대	219,980	249,082	증) 29,102	○ 학교→공원 : 31,206m ² ○ 공원 해체 : 2,104m ²

(다음 페이지에 계속)

밀려 교사를 건축한 결과 연쇄적으로 주택 37동이 타인소유 토지(703평)에 건축되어

- 최종 토지를 점유당한 민원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한 10인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 경계분쟁이 발생되었으며
- 타인의 토지상에 건축한 주민들은 재산권행사 제약 및 건물의 신·개축허가 등이 불허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15년 이상 계속된 경계분쟁지의 장기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 최종 토지를 점유당한 민원인이 제시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배봉산근린공원(603평)을 해제하여 민원인에게 활용토록 하는 대신 휘경학원소유 학교용지 9,440평을 대체 공원으로 지정하여 장기집단 민원해결 및 우리 시의 부족한 공원·녹지공간을 확충코자 하며
- 지적정리시 일반주거지역에서 풍치지구로 되는 토지(82평)는 동 지구에서 해제하고 공원해제 토지(603평)는 주변 경관 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함.

※ 공원결정대상지 9,440평중 3,225평은 토지소유자인 휘경학원에서 동대문구청에 기부채납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며, 휘경학원에서 점유한 민원인 소유토지 703평을 동 학원에 무상귀속 예정임.

3. 도시계획변경결정 조서